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20284

제안연월일: 2023. 2.

제 안 자:보건복지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1건의 법률안(정부 제출, 의안번호 17627호)은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 위원회에 회부하고, 1건의 법률안(강기윤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8179호)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바로 회부함.

건 명	의안번호	발의자 (제출자)	제안일	전체회의 상정일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11021		`22.9.29.	`22.11.7.	
일부개정법률안	18179	강기윤의원 등 10인	`22.11.9.	소위 직회부	

- 나.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제2법 안심사소위원회(2022. 12. 6.)에서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 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 다.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보건복지위원회(2022. 12. 9.)는 법 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보건복지위원회(2022. 12. 9.) 비용추계 생략의결

2. 대안의 제안이유

소득수준에 비하여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여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국민건강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한 재난적의료비지원 목적에 따라, 외래로 진료를 받는 경우에도 입원과 동일하게 모든 질환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희귀질환을 진단·치료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 등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의료기관 등의 처방에 따라 '희귀질환을 진단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로서 국내에 대체 가능한 제품이 없는 의료기기'를 구입한 비용에 대해서도 재난적의료비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 실적이 저조한 재난적의료비지원정책심의위원회를 폐지하는 등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외래로 진료를 받는 경우에도 모든 질환에 대하여 지원하도록 함(안 제10조제1항제1호).

- 나. 의료기관 등의 처방에 따라 '희귀질환을 진단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로서 국내에 대체 가능한 제품이 없는 의료기기'를 구입한 비용에 대해서도 재난적의료비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1항제2호).
- 다. 재난적의료비지원정책심의위원회를 폐지함(안 제7조 삭제 등).
- 라.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서 상세히 규정함(안 제25조).

법률 제 호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9조제2항 중 "재난적의료비"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재난적의료비"로, "고려하여 심의위원회가"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 목의 의료기관 등(이하 "의료기관등"이라 한다)에 입원하여"를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기관(이하 "의료기관등"이라 한다)에서 입원 또는 외래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제1호의 진료 과정에서 의료기관등의 처방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를 구입한 경우
 - 가. 「약사법」에 따라 등록한 약국 또는 같은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의약품을 구입한 경우나. 「의료기기법」 제1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를 구입한 경우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있으면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를 "있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이 법에 따른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를

-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제5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
 - 2. 제11조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
 - 3. 제23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무
 - 4.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재난적의료비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3조(결손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이후 공단이 결손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4조(재난적의료비지원정책심의위원회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제2항에 따라 재난적의료비지원정책심의위 원회가 인정한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은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으로 인정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재난적의료비지원정책심의	<삭	제>			
위원회 등) ① 재난적의료비 지					
원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					
<u>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보</u>					
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재난적					
의료비지원정책심의위원회(이					
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					
<u>다.</u>					
1.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운					
영 계획에 관한 사항					
2. 제9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					
정 및 그 기준 설정에 관한 사					
<u>항</u>					
3. 제13조에 따른 지급범위 및					
<u>상한 결정에 관한 사항</u>					
4. 제19조에 따른 결손처분에					
<u>관한 사항</u>					
5. 그 밖에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					
<u>성한다.</u>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					

- 복지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1. 의약계를 대표하는 단체에서추천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전문가 4명 이내
- 2. 환자를 대표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명 이내
- 3.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가 4명 이내
- 4.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1명
- 5. 공단의 상임이사 중 1명
- 6.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금의 기금관리주체(「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관리주체 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중 1명
- 7. 제2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관 런 법인·단체가 추천하는 사 람 중 1명
- 8.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3명 이 <u>내</u>
- ④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운영을 실무적으로 지원하고 심의 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한 사항을 처리

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재난적의 료비 지원사업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⑤ 그 밖에 심의위원회 및 실무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제9조(지원대상)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에도 불구하고 재난적의료비를 부담하는 사람의 질환 특성, 가구 여건 및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가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자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③ • ④ (생 략)

제10조(지급신청 등) ① 재난적의 료비에 대한 지급을 받으려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 유로 재난적의료비가 발생한 경 우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공단에 재난적의료비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다음 <u>각 목의 의료기관 등(이</u> 하 "의료기관등"이라 한다)에

제9조(지원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
보건복지부장관이 재난적
의료비
<u>고려하여</u>
③・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지급신청 등) ①
1 <u>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u>
당하는 기관(이하 "의료기관

가. ~ 다. (생 략)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질 <삭 제> 환에 대한 치료를 위하여 의료 기관등에서 외래로 진료를 받 는 경우
- 정에서 의료기관등의 처방에 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 • 필 우 수의약품센터(이하 "한국희 가. 「약사법」에 따라 등록한 귀ㆍ필수의약품센터"라 한다) 약국 또는 같은 법 제91조제 에서 의약품을 구입한 경우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 ④ (생 략)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유가 있으면 심의위원회의 ----- 있는 경우에는 -----

<u>입원하여</u> 진료를 받는 경우 <u>등"이라 한다)에서</u>입원 또는 외래로 -----가. ~ 다. (현행과 같음)

-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진료 과 2. 제1호의 진료 과정에서 의료기 관등의 처방에 따라 다음 각 목 따라 「약사법」에 따라 등록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약 한 약국 또는 같은 법 제91조 품 또는 의료기기를 구입한 경
 - 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 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의 약품을 구입한 경우
 - 나. 「의료기기법」 제15조의2제 1항제1호에 따른 희소・긴급 도입 필요 의료기기를 구입한 경우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9조(결손처분) ① 공단은 다 제19조(결손처분) ① -----

의결을 거쳐 부당이득금, 연체 금 및 제17조제7항에 따른 체납 처분비(이하 "체납액"이라 한 다)를 결손처분할 수 있다.

1. • 2. (생략)

② (생략)

제25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보건복지부장관, 공단(제27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요양기관 또는 의료급여기관 등은 이 법에 따른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1. •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5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의 처리) ①
-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
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u>/ </u>
1. 제5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재
<u>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관리</u>
<u>운영에 관한 사무</u>
2. 제11조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
3. 제23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무
4.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로서 대통		
	<u> 령령으로 정하는 사무</u>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